

미래교육의 중심
새로운 경기교육

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
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



2023. 9.

운담초등학교

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

I 추진 근거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)
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0조의3(학생생활지도)
-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교육부 고시 제2023-28호(2023.9.1.)
-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부칙 제2조(학칙에 관한 특례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칙에 관한 특례) 제8조제4호, 제12조제6항 및 제9항,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, **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.** 다만, 학교의 장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.

II 배경 및 필요성

-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필요
-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긴급성이 학칙 개정 전까지 있는 경우 별도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

III 목적

-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를 반영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전까지 안정적인 학생생활교육 운영으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

학교교육현장 안정화

-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하여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이 모두 인지함으로써 학생·교원·보호자의 권리 제고와 책무성 고취

IV 방침

- 학교장 내부결재 후, 교육 3주체(교원·학생·학부모)에게 **공표하고 시행**
- 교직원 공람, 학교 홈페이지,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함
- 본 특례 운영 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 학칙에 따름

V 운영 기간

-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수립 후 - 학칙 개정 전까지
- 학칙 개정은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2023.10.31.까지 완료되어야 함.

VI 세부 사항

1 특례 운영 내용

○ 고시 (제8조제4항)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(학업 및 진로), 제6조(보건 및 안전), 제7조(인성 및 대인관계) 외에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.

- 고시 <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>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 생활지도할 범위가 필요하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학칙으로 정한다.

○ 고시 (제12조제6항)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·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1.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
2.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
(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)
3.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
4.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

-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 한시적인 특례 운영 후,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학칙으로 정한다.

[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 운영]

생활지도	요건	분리장소(시간)	절차 및 유의점	학습지원
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	대상: 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,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	교실 내 다른 좌석	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	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
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		교실 내 지정된 위치(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)		
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	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	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(수업 시간 내 일부)	주의를 준 후 실시,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	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
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'가'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	교무실 등 지정 장소 (수업 종료 시 까지)	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,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	행동성찰문,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	
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	가 수업시간에 미인정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	교실 등 (점심시간 내 20분 내외)	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(20분) 보장	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
나 ① 3호 '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	교무실 등 지정 장소 (60분 이내)	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	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	

○ 고시 (제12조제9항)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.

1.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
2.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
3.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
4. 소지금지 물품(학칙으로 정한 물품)

- 제12조제9항에 대해 한시적인 특례 운영 후,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학칙으로 정한다.

[제12조제9항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 운영]

요건		분리기간	분리장소	분리방법
1	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	수업시간	교실 지정 장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회차 : 주의 실시 · 2회차 :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· 3회차 :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· 수업 종료 후 : 즉시 되돌려줌
2	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	3일	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· NEIS 학생관찰 누가기록란에 입력 · 학부모에게 알리고, 요청하는 경우 보관 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※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
3	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			
4	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			

○ 고시 (제18조)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-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학칙으로 정한다.

2

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추진 일정

절차	참고	기간
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생, 학부모(보호자), 교원, 전문가로 구성 (8인~12인 내외로 구성) 학생위원 수가 전체 위원 1/3이상 되도록 구성 	2023.9.13까지
↓		
제·개정안 발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규정개정심의위원회, 학생회, 교직원회,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발의 	2023.9.22까지
↓		
학교교육공동체 의견 수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(학생, 학부모(보호자), 교원)의 의견 수렴 	2023.9.25.~10.6
↓		
제·개정 시안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교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결과를 통해 제·개정 시안 마련 	2023.10.6까지
↓		
규정개정 심의위원회 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·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	2023.10.10.~13
↓		
학교운영위원회 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 부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제·개정안 확정 	2023.10.23.~27
↓		
학교장 결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결재 	2023.10.30
↓		
공포 및 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, 홈페이지,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서 학생과 보호자 등이 알기 쉽게 별도의 팝업창으로 공지 학교정보공시(수시)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업무관리로 보고 	2023.10.31까지

Ⅵ 기대 효과

-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를 반영한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운영으로 교육공동체의 권리 제고와 책무성 고취를 통한 교육현장의 안정화
-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인식 제고로 자율 속에서 책임을 배우는 균형잡힌 학생생활지도 문화 조성